

의안번호	2209405
의 퇴 인	김대식 의원
회 답 일	2025.06.30.
추계번호	25C165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자립지원 대상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470만원, 2030년 3,39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억 7,120만원(연평균 3,42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34.7	34.3	34.1	34.1	33.9	171.2	34.2

주: 1.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가 ①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 및 ②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만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2.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이 포함되나,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일부 인원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제2항)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가 ①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 및 ②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근거한 학자금대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학자금대출 사업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두 유형으로 이루어지며¹⁾, '25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에 1조 5,560억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에 8,893억원이 편성됨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함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함
- 개정안에 따른 기간 중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기초자료 부족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據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 따라서, 본 추계서에서는 자립지원 대상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 연간 추가재정소요는 ①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②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립지원 대상자 수(이하 “이자 면제 대상자 수”)에 1인당 대출잔액과 대출금리를 곱하여 추계

- 자립지원 대상자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참조하여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으로 가정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자립지원 대상자는 ①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②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③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하 “보호종료아동”), ④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
 - 이 중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 참고로, 해당 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²⁾에 입소하여 18세 이전에 보호종료된 청년이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됨³⁾
 - 또한,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은 전체 인원, 연령 등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으로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종료 및 시설 퇴소가 예정된 사람(이하 “보호종료예정아동”)으로 같음함
 -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가정

2) 「청소년복지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법」에 따른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등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024.2.27.), 2p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자 수에 1인당 대출잔액과 대출금리를 곱하여 연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가. 이자 면제 대상자

- 만 17~29세 인구에 자립지원 대상자 비율과 대학 재적률을 곱하여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지 않은 자립지원 대상자의 수를 산출한 뒤,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
 - (만 17~29세 인구) 추계연도별로 2023년 12월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준용

[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17~29세 인구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7~29세 인구	7,282,049	7,060,010	6,887,220	6,738,928	6,573,015

주: 통계청의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 (자립지원 대상자 비율) 17~29세 인구 중 자립지원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며 '24년 기준 수치인 0.14%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 (대학 재적률)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⁴⁾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에서 대학교 졸업 비율을 제외하여 추계기간 동안 29.2%로 산출

4)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2023.12).

[표 3] 자립지원 대상자 비율

(단위: 명)

구분			인원수
17~29세 인구(A)			7,917,654
자립지원 대상자	보호종료예정아동		1,203
	보호종료아동	1년차	1,173
		2년차	1,740
		3년차	2,102
		4년차	2,368
		5년차	2,587
	계(B)		11,173
	자립지원 대상자 비율(B/A)		0.14%

주: 현시점에서 '25년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24년의 통계를 활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인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애인구추계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자립지원 대상자의 교육수준

구분	사례수(명)	비율(%)
중학교 이하	32	0.6
고등학교 재학 중	17	0.3
고등학교 중퇴/휴학	89	1.8
고등학교 졸업	1,390	27.6
대학 진학	3,504	69.7
2~3년제 대학교 재학 중	306	6.1
2~3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384	7.6
2~3년제 대학교 졸업	1,035	20.6
4년제 대학교 재학 중	512	10.2
4년제 대학교 중퇴/휴학	214	4.3
4년제 대학교 졸업	1,001	19.9
대학원 이상	52	1.0
계	5,032	100

자료: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학자금대출 이용자 비율)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참조하여 추계기간 동안 16.1%를 적용
 - －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사람의 비율은 16.1%임

□ 상술한 가정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자 수는 2026년 483명, 2030년 436명 등으로 추계

[표 5]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자 수 전망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7~29세 인구(명, A)	7,282,049	7,060,010	6,887,220	6,738,928	6,573,015
자립지원 대상자 비율(% B)	0.14	0.14	0.14	0.14	0.14
대학 재적률(% C)	29.2	29.2	29.2	29.2	29.2
학자금대출자 비율(% D)	16.1	16.1	16.1	16.1	16.1
이자 면제 대상자 (명, E = A×B×C×D)	483	468	457	447	4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1인당 대출잔액 및 대출금리

- (1인당 대출잔액) 2024년 기준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등록금 대출잔액을 준용하되,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두 유형이 있으나 생활비 대출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2023년부터 이자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등록금 대출만을 추계⁵⁾

[표 6] 1인당 대출잔액 전망

(단위: 천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당 대출잔액	4,225	4,310	4,396	4,484	4,574

자료: 교육부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2.11.17), 8p

- (대출금리) 2021년 이후 1.7%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5년 역시 동일한 금리가 유지됨을 가정

다. 추계결과

- 자립지원 대상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470만원, 2030년 3,391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억 7,115만원(연평균 3,423만원)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이자 면제 대상자(명, A)	483	468	457	447	436	-	-
1인당 대출잔액(천원, B)	4,225	4,310	4,396	4,484	4,574	-	-
대출금리(% , C)	1.7	1.7	1.7	1.7	1.7	-	-
추가재정소요 (천원, D= A×B×C)	34,702	34,317	34,147	34,080	33,906	171,152	34,2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